

●국토교통부고시 제2022-176호

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

‘충격차단공과 철근-숏크리트를 이용한 근접병설터널의 암반 필라부 시공법’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년 04월 04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신기술개발자

신청인	법인명(성명)	(주)하이콘엔지니어링		
	주 소	우)58117 전남 화순군 화순읍 만연로 66-3(3층)		
	전화번호	02-3400-6548	팩스번호	02-416-2767

2. 신기술의 개요

- 지정번호 : 제729호
- 명 칭 : 충격차단공과 철근-숏크리트를 이용한 근접병설터널의 암반 필라부 시공법
- 기술분야 : 토목 > 터널 > 터널 구조물 설치
- 내용요약

이 신기술은 충격차단공(슬롯 드릴링, 라인 드릴링)을 이용한 진동제어발파기술과 철근-숏크리트를 이용하여 필라부에 대해 보강기술을 사용하여, 암반 터널 입·출구에서 터널간 이격거리를 좁히고 터널내에서 넓혀가면서 굴진하여 선·후행 터널별로 차등적인 굴착 및 보강방법을 적용하는 암반 근접병설(병렬)터널의 시공법이다.

- 신기술의 범위

충격차단공(슬롯 드릴링, 라인 드릴링)을 이용한 진동제어발파기술과 철근-숏크리트를 이용하여 필라부에 대해 보강기술을 사용하여, 암반 터널 입·출구에서 터널간 이격거리를 좁히고 터널내에서 넓혀가면서 굴진하는 암반 근접병설터널 시공법

3.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

가. 보호기간 : 2014. 4. 9. ~ 2028. 4. 8.(14년)

나. 보호내용 :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

-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
-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,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
-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

4. 기 타

○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(<http://www.kaia.re.kr>) 「지식/성과도서관/신기술.추천기술」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